

제43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0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7월30일(목)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5)
2.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7)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6)
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3)

상정된 안건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5) 2
2.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7) 2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6) 2
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3) 2

(13시51분 개의)

○소위원장 김승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0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른 특검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가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마지막 심사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5)
2.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7)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6)
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3)

(13시52분)

○소위원장 김승원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른 특검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 지난 회의에서의 심사경과와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에 따른 추가 논의 필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소위까지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는 확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논의하실 내용은 2조·7조 그리고 부칙, 지난 소위에서 부칙 관련 사항을 좀 수정해 보라고 하셔서 그 내용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서 수사대상이 확정되었고요. 1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 명백하게 일부 자구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1항과 1호 같은 경우는 낱자를 명시했고요. 그리고 6호, 7호 같은 경우는 약칭으로 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정식 명칭화 했습니다.

그리고 2쪽의 8호를 보시면 국정조사 과정이라고 해서 ‘국정조사’라고 써 있는데 국정조사특위의 정식 명칭을 사용해서 문구를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12호의 경우 합의 문구는 ‘수사대상 사건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특검 입법례에 따라 그에 맞추어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정도가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고요.

하나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1쪽의 5호에 보시면 5호의 맨 마지막, 네 번째 줄에 분실 경위와 관련된 선거공문서·물품관리법 위반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과 물품관리법 위반 사건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확한 의미가 저희로서는 해석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고하시고……

○전문위원 최기도 예, 먼저 2조만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5호는 한병도 의원안에서 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3항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 주셔도 되나요, 2페이지 하단?

○전문위원 최기도 2페이지의 2항과 3항은 이미 결정하신 내용이라서, 이미 논의에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 기우중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우선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특검법 개별 조항 관련해서 검토 필요한 사항은 지난 소위에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수사대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추가 안을 검토하고 필요 시에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지난번 말씀드린 내용 외에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박형수 간사님께서 말씀 주실……

○박형수 위원 전문위원님, 제9회 앞에다가 ‘시행된’ 이것 꼭 넣어야 돼요? 제9회라고 해도 특정되는 것 아닌가요? 왜 꼭 이것 넣어야 되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없어도 됩니다.

○박형수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전문위원 최기도 의원안에 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넣었는데……

○박형수 위원 복잡하게 이런 것 넣을 필요 없지, 제명도 보면 제9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이렇게 돼 있어서……

○전문위원 최기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삭제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그러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다음에 5호,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선거공문서·물품관리법 위반 사건 이것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김한규 위원 물품관리법이라는 법은 따로 있는데 저도 공문서 관리법이라는 게 뭔지……

○소위원장 김승원 선거공문서 위·변조인가요?

○전문위원 최기도 앞부분이 중요 선거물품의 무단 방치·유출·폐기 및 분실 경위라든가 투표용지·투표지 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이런 것들이라서, 굳이 이해하자면 선거공문서나 물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염두에 두신 것 같기도 하고 의미를 명확히 확정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공문서는 위·변조도 있고 허위공문서 작성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조금 폭넓게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승원 제가 볼 때는 앞에 열거된 사실관계를 법률언어로 바꾸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앞의 이러이러한 것들이 물품관리법 위반 사건에 해당하는 그런 것 그다음

에 선거공문서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건 이걸 표현하시려고 법률 문장으로, 단어를 바꾸시려고 한 것 같은데요.

혹시 아이디어를 주시면 조금 정정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저희 전문위원 측이 생각하는 건 선거공문서·물품 관련 법 위반 사건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요.

○소위원장 김승원 다시 한번, 선거……

○전문위원 최기도 선거공문서·물품 관련 법률 위반 사건.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데 물품관리법은 정확히 관리법이라고 돼 있는데?

○박형수 위원 물품관리법이란 법이 있는가?

○전문위원 최기도 예,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물품관리법이 있는데 이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김한규 위원 표현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법으로 한정될 수 있어서.

○김남희 위원 그 법에 대한 내용은 아니라……

○소위원장 김승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줄 중간부터 보면 투표용지 보관 상자, 기표 용구,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 등 중요 선거물품의 무단 방치·유출·폐기 및 분실 경위와 관련된 선거공문서—문서라는 건 투표지라든가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와 물품 등, 선거공문서 등 물품관리법 위반 사건.

그러니까 법 위반은 물품관리법 위반 사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박형수 위원 그런데 물품관리법이 이거랑 내용이 다르다면서요.

그러면 뒤에 선거공문서·물품관리법 이걸 빼고 앞의 이 분실 경위와 관련된 무슨 사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곽규택 위원 다른 것하고 비교해 본다면 그냥 관련된 의혹 사건이라고 해도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구는 ‘관련된 범죄 의혹 사건’ 이런 게……

○박형수 위원 뒤에 그렇게 돼 있네. 뒤에 9호에 보면 ‘비리 관련 사건’ 이렇게도 돼 있고 10호에 보면 ‘의혹 사건’ 이렇게도 돼 있네. 그러면 비리 사건이나 의혹 사건 이렇게 이걸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는데.

○김태규 위원 개표기 이런 게 물품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니면 계수기 그런 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 관리하는 그 법을 위반한 걸 얘기하는 거라서 선거 공문서·물품 관련……

○곽규택 위원 관리 관련 의혹 사건 이런 구조.

○김태규 위원 관리 관련 법률 위반 사건, 의혹 사건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합시다.

○김태규 위원 선거 공문서·물품 관리 관련 법률 위반 사건이라고……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선거 공문서는 그 앞에 열거된 투표용지, 투표지 관리, 투표지 그다음에 이런 것 같고요.

○김태규 위원 예,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다음에 물품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 기표 용구,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 이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된 선거 공문서와 관련 물품의 관리법 위반 사건.

○박형수 위원 관리법은 빼고.

○김태규 위원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의 관리와 관련된 법률.

○김한규 위원 그래서 이게 공문서하고 물품에 대상한 범죄라 저는 원래 취지 자체가 공문서, 물품의 위·변조, 허위 작성 또는 허위 조작 관련 사건 이 정도의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소위원장 김승원 저도 그런 취지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박형수 위원 아니, 뒤에 보면 주로 무단 방치, 유출, 폐기, 분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위·변조 관련된 이런 게 아니라……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 건 아니지요, 사실은.

○박형수 위원 물품 자체가 없어지거나 분실하는데 고의로 빼돌렸다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소위원장 김승원 선거용지와 물품의 관리 위반 사건 이런 건데요.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곽규택 위원 그런데 경위와 관련된 의혹 사건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박형수 위원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김태규 위원 어쨌거나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김한규 위원 관리와 관련된 사건.

○곽규택 위원 경위와 관련된……

○박형수 위원 분실 경위와 관련된 의혹 사건 그렇게 하면 되겠네.

○곽규택 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다른 조항도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한규 위원 그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승원 의견 어떠신가요?

○곽규택 위원 아니면 경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김한규 위원 그런데 앞에도 다 물품하고 문서 관련된 거니까 특별히 확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남희 위원 분실 경위와 관련된 법 위반 사건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법 위반이라는 거를 합의를 한 상황이니깐 법 위반.

○김한규 위원 관련된 법 위반 사건?

○김남희 위원 예.

○박형수 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곽규택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김한규 위원 그 정도로 하시지요.

○박형수 위원 의혹 사건이나 법 위반 사건이나……

○소위원장 김승원 분실 경위와 관련된 법 위반 사건.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선거 공문서·물품 관리만 빼면 되는 거네요.

○곽규택 위원 예.

○김한규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게 하시고 혹시 한번 원내나……

○박형수 위원 동의를 했는데 원내…… 그냥 처리해요.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다음 진행하실까요?

○김태규 위원 아니, 최종적으로 문구를 다시 한번 정리를……

○소위원장 김승원 3조부터 전문위원 보고 계속 받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니, 방금 그 선거 공문서 부분.

○곽규택 위원 이걸 빼는 거로.

○소위원장 김승원 확정이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 최기도 그러면 제2조 1호에서 ‘2026년 6월 3일 시행된’은 빼는 것으로 하려고요.

○소위원장 김승원 삭제.

○전문위원 최기도 그리고 5호에서 관련된 법 위반 사건으로 하셨고……

○소위원장 김승원 그거는 김한규 위원님께서 답을 주시면 그때 확정 짓는 걸로. 나머지는 됐고.

○전문위원 최기도 그리고 나머지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쪽은 다 하셨고요. 그리고 8호에서도 국정조사특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받아들이시는 걸로 보고 그리고 9·10·11호 똑같이 12호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기존 특검법 입법례에 따라서 저희가 수정한 대로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조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희는 아까 그 수정안들은 괜찮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시지요. 알겠습니다. 2조는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예, 그러면 5호는 관련된 법 위반 사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전문위원 최기도 다음, 6쪽입니다.

6쪽에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이고요.

먼저 협조 대상 기관을 3항에 있는 것처럼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에서 어디까지 확대하실 것인지하고 그다음에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그 부분의 나 부분에서 유상범 의원안과 같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실지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7쪽에 4항, 5항과 같이 유상범 의원안과 같이 추가로 자료제출 근거 규정이라든가 그리고 인쇄업체, 운송업체에 대한, 민간업체에 대한 자료제출, 협조 요청 규정을 둘 것인지. 그래서 4항에서 파견 대상 기관을 어느 범위까지 하실 것인지.

그리고 5항에서 고위공직자, 공수처에서 2명 파견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실 것인지 그리고 6항에서 관계 기관의 장과 범위 그리고 반드시 따르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둘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쪽의 7항은 확정된 내용이라서 6쪽과 7쪽에 있는 내용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박형수 간사님.

○박형수 위원 3항에 이거 지난번 논의를 하다가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상 기관은 유상범 의원안에다가 김은혜 의원안에 있는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를 넣자 그리고 자료제출 대상은 유상범 의원안에 있는 이렇게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종전처럼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대상 기관을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빼고 그러면 유상범 의원안에 있는 이거대로만 하고 자료제출 대상은 백혜련·한병도 의원안, 김은혜 의원안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의견 제시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합의문에는 안 들어갔는데 양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합의문 작성하기 전에 어제 이미 이거 관련해서 합의는 이렇게 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수처, 경찰청 외에 중선관위, 우정사업부, 조달청만 포함하기로 협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박형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행정안전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빼면 되네.

○김한규 위원 각급 선관위도 빼고요.

○곽규택 위원 아니, 각급 선관위를 왜 뺐니까?

○박형수 위원 왜 빼지? 중앙선관위만 하고. 이상한데?

○김태규 위원 그걸 빼면……

○소위원장 김승원 그냥 압수수색영장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거는 양당 간의 협의를 한 끝에……

○곽규택 위원 아, 그런가요?

○김한규 위원 그렇게 제안하고 나머지는 영장청구로 가자라고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거는 제가 합의 주체는 아니니까 간사님께서도 한번 확인을, 얘기를 해 보시지요.

○박형수 위원 희한하게 합의를 했네. 각급 선관위를 빼면 중앙선관위는 뭐 하려고 넣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승원 이거는 자료제출이니까요.

○박형수 위원 아니, 각급 선관위에 더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승원 중선위에서 자료가 나와서 의혹이 있으면 각급 선관위로 가지 않겠습니까?

○김용민 위원 중선위 통해서 받으면 되지. 보통은 그렇게 하잖아요.

○곽규택 위원 그러면 특검에서 중앙선관위에 요청해 가지고 각급 선관위에 있을 수 있는 자료를 달라 이러면 준다는 거지요?

○김한규 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합의를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료제출 대상이나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합의하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선거 관리 실제를 보면 선관위 직원분들도 하지만 행정 협조로 해 가지고 행안부하고 지자체에서 사실 선거에 많이 관여를 해요. 그런데 특검에서 만약에 이거 지금 전국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에 하려 그러면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조금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자료제출 요청이.

○소위원장 김승원 대개 파견 나와서 일만 하시지……

○김한규 위원 아니, 곽규택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주장을 하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런데 협의 끝에 이 정도로 제안을 하고…… 저희도 처음부터 행안부, 지자체에 대해서 국민의힘 요구하시는 거는 이해를 하고 있고 지도부도 알고 있는데 협의 범위가 아무래도 다른 것들하고 같이 협의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각급 선관위까지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걸 빼고 지도부가 협상했으면 우리 지도부가 협상을 잘못된 거예요. 그거 번복시켜야 돼. 다시 협상하라 그래.

○소위원장 김승원 각급 선관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7페이지 상단 4항, 6항. 4항은 사족 같고 6항은 민간단체에 대한 거라 이거는 넣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곽규택 위원 일단 자료제출 대상은 그러면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로 가시는 거고.

○소위원장 김승원 예.

○곽규택 위원 그렇고.

○소위원장 김승원 이제 이것만 남은 것 같은데 빨리 의견 주셔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4항하고 6항이요?

○전문위원 최기도 7쪽 제일 위에 있는 유상범 의원안 기준 4항하고 6항입니다.

○곽규택 위원 이견 합의 과정에서 이야기가 안 된 모양이지요?

○김한규 위원 예.

○박형수 위원 내가 뭐라 할 줄 알고 전화를 안 받는데. 그것 확인되면 이따 얘기합시다, 다른 것부터 하고.

○소위원장 김승원 여기 4항 보시면 ‘법원의 영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제출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적법절차에 따른다면 그냥 법에 의해서 하면 되지 4항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6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업체에 대한 거라, 개인도 있네요. 이것은 조금 침해적, 위험해 보여서……

○김태규 위원 개인이 알아서 판단할 건데…… 자료제출, 협조인데 상관 있겠습니까? 해도 될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승원 선례가 되거나 관행이 될까 봐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전 선례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최기도 예, 4항하고 6항은 기존 특검법에서 입법례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도 이 4항, 6항은 빼자는 말씀이시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처음 들어온 건데요. 전례도 없고……

○김태규 위원 우리도 새로운 것 한번 해 보지요, 그동안 새로운 것 많이 하셨는데. 그

것도 아주 새로운 것도 아니고……

영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 등을……

○**김남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하나 마나 한 얘기 아니에요, 어차피 영장이 있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데?

○**김태규 위원** 그래서 강조하는 거니까 한번 넣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남희 위원** 영장이 있으면 당연히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걸 왜 굳이 넣으시려는지 이해가 잘……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선언 내지는 상징적 의미로 주의 규정으로 넣어 두는 것도 괜찮겠네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데 합의문에 신사조항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많이 봤지만 법률에 신사조항이 들어가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형수 위원** 4항이 아니라 6항은 필요한 것 아니에요, 6항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법인·단체, 개인에게 필요한 자료……

○**소위원장 김승원** 이건 민간에 대한 거라……

○**박은정 위원** 6항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위법 소지도 있어서……

○**김태규 위원** 위법의 소지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임의수사하고 별 차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주겠다면 주는 거고 안 주면 못 받는 건데……

○**박은정 위원** 수사기관이 강제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해서 압박이 될 수 있고……

○**김태규 위원** 수사기관이 임의수사인데 무슨 강제성이 있습니까?

○**박은정 위원** 임의수사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있는 공문서의 조회 이 조항을 다 없애야지. 임의수사 방식으로 분명히 있는데……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임의수사 자료는 다 없애 버려야지요.

○**박은정 위원** 공문서 조회는 공문서에 대한 거고 여기 지금 사적인 기관이 들어가 있고요.

○**박형수 위원** 사적인 기관도 마찬가지지.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사기관이니까 더더욱 함부로 할 수 없는……

○**박은정 위원** 그리고 공문서 조회에 대해서는 법원은 강제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이 사적 인사, 사적인 단체·기관,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방금 김남희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원래 다 당연한 거라서 있으나 마나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주의적으로 넣어 두자는 건데 그게 위법 소지가 있다는 건 저는 도대체가 납득이 안 됩니다. 임의수사인데 뭘 강제성이 있습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6항은 제가 볼 때 주의적은 아니고요. 6항은 조금 기본적 침해 그런 거니까, 민간에 대한 거라서……

○**박형수 위원** 아니, 임의수사로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김태규 위원** 임의수사도 할 수도 있고 자료제출, 협조 요청하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알았다고 그러면 해 주고 안 해 준다고 해서 특별히……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데 근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있으면 더 세게 요구할 수 있지요.

○**김태규 위원** 지금 제재가 있는 것은 3항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3항에 대한 게 제재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다 큰 틀에서 합의가 된 건데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그리고 원래 새로운 것 잘 안 집어넣고, 기존 관례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박형수 위원** 각급 선관위 잘못 알고 있던데, 각급 선관위 넣었다는데.

○**김한규 위원**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것 틀리면 6항 넣어야 돼.

○**김한규 위원** 저는 하여튼 문자로 받았는데……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그 밑에 5항이 있습니다, 제4항에 따른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이것은 지난번 심사에서 빼기로 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 최기도** 공수처에서 하는 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5항은 삭제로 말씀 주셨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그리고 4항도 파견 대상 기관을 어디까지 받으실 건지 또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대검찰청, 공수처……

○**소위원장 김승원** 공수처는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전문위원 최기도** 그것은 5항에서 별도로 2명을 필수적으로 받는 규정을 없애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대검찰청, 공수처, 경찰청에서는 항상 파견 공무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더해서……

○**소위원장 김승원** 김용민 위원님, 어떠세요, 대검, 공수처, 경찰청?

다는 뭐예요?

○**전문위원 최기도** 다가 밑에 보시면 오른쪽에 김건희특검이나 내란외란특검, 종합특검에서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으로 되어 있고요. 순직해병특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국방부도 포함돼 있다 이런 표시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밑의 김은혜 의원안 같은 경우는 파견 대상 기관을 금융위, 금감원 그다음에 유상범 의원안은 행정안전부, 중앙선관위, 각급 선관위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검찰, 공수처, 경찰청만 규정돼 있었고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데 뒤에 ‘등’ 자가 붙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그런데 명시가 돼 있는 건 세 기관이라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데 어차피 ‘등’ 자가 붙어 있어서 큰 차이는 없겠네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곽규택 위원** 그냥 4항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형수 위원** 4항 그냥 두는 걸로 합시다.

○**소위원장 김승원** 4항은 넣는 걸로 하고……

(「7항?」 하는 위원 있음)

이 4항 말고 저 밑에 있는 4항.

○**곽규택 위원** 밑에 있는 4항은 그대로 넣는 걸로 하고 5항은 빼고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전문위원 최기도** 4항은 이대로만……

○**소위원장 김승원** 예.

○**전문위원 최기도** 그러니까 일반 입법례에 따라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박형수 간사님이 확인을 잘해 주셨는데요. 각급 선관위를 넣기로 했었답니니다. 저한테 전달하신 분이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6항은 빼시지요.

위에 있는 4항은 유지합니까? 빼시지요, 중선위, 각급 선관위.

○**김용민 위원** 기존에 했던 대로 그냥 가시지요. 이런 것들은 괜히……

○**박형수 위원** 무슨 4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7페이지 4항?

○**소위원장 김승원** 7페이지 상단에 있는 4항, 6항.

○**박형수 위원** 그건 빼기로 했잖아.

○**곽규택 위원** 굵은 글씨로 돼 있는 것.

○**박형수 위원** 그러면 4항은 빼고 6항은 넣든지.

○**김한규 위원** 둘 다 빼시지요.

○**박형수 위원** 우리가 하나 빼면 그쪽도 하나 빼는 게 있어야지 우리만 다 빼라고 그래요?

○**김태규 위원** 6항 넣읍시다.

○**소위원장 김승원** 이것 새것이라, 새로 넣는 거라……

○**김태규 위원** 새것도 한 번씩 해 봅시다. 민주당은 많이 하셨잖아요, 새것.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이건 민간인들이…… 저희들이 욕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합의 처리하는 건데 새로운 걸 넣지 말지요. 하던 대로 하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4항은 그냥 빼 주시지요. 각급 선관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간사님,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뺏시다. 어차피 임의수사로 요청해 가지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 하던 되는 거고.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굵은 글씨로 돼 있는 것은 다 빠지는 거네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결론은 그렇게 되네요.

전문위원님 하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6항에서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6항을……

○**소위원장 김승원** 어디 몇 페이지의 6항을……

○**전문위원 최기도** 7쪽 맨 밑에 있는 6항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 굵은 글씨 말이군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런데 4항하고 6항을……

○박형수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특검에서 다 그렇게 했다면서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박형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둡시다.

○전문위원 최기도 그러면 반드시 하는 걸로……

○박형수 위원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만……

○김한규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소위원장 김승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김남희 위원 그런데 3항부터 5항까지가 아니라 3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으로 바뀌어야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해 주실 겁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대상기관을 어떻게 정한 겁니까?

○김남희 위원 중앙선관위, 각급 선관위, 대검찰청, 공수처,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조달청.

○김태규 위원 행안부, 지자체만 빠집니다. 그렇지요?

○김남희 위원 예.

○전문위원 최기도 마지막 18쪽의 부칙입니다.

1·2·3·4조는 확정되었고요.

제5조에서 먼저 시행 시점이 좀 애매할 수 있다는 김용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의’라고 해서 써 주었고.

그다음에 2항에서는 ‘이 법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도’라고 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줄에 ‘이 법 시행 당시의 형사소송법에 따른다’라고 해서 시행되는 시점이 당시 시점이라는 걸 약간 더 명확하게 문구를 바꿨습니다. ‘공포 후’로 쓰면 입법적인 입법례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항에서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이 경과조치 대상에서 누락돼 있다는 박은정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그걸 포함해서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조정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구체적인 법문과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기우중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곽규택 김남희 김승원 김용민 김태규 김한규 박균택 박은정 박형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최기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중

입시회의록